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한 선 미 의원)

의안 번호	26-57
----------	-------

발의년월일: 2026. 4. .

발 의 자: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차해영, 최은하, 홍지광

1. 개정이유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및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5개 장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규정을 다수 조문으로 분리하며, 용어 및 법령 인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체를 총칙,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의 관리 및 보호, 반려견 놀이터, 보칙의 5개 장으로 체계화함(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나.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장 직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

조까지)

다. 동물등록 관련 조문 사이에 있던 맹견에 대한 조문을 동물의 관리 및 보호의 장으로 이동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라.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3항)

마.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위탁보호비 등 돌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9조)

바.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소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통일하고, 현행 제2조에서 정의하는 약칭에 따라 올바르게 바꾸는 등 용어 및 법령 인용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3.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6. 4. 6. ~ 4. 10.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12호 전단 중 “**소유자와**”를 “**소유자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동물복지위원회

제5조의 제목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10조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4장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28조를 제35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며, 제22조를 제20조로 하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

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의”를 “제1항제1호가 변경된”으로, “제6호까지의”를 “제6호까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제2호가 변경된”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구”로 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질병·정신적 제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동물의 관리 및 보호

제15조(종전의 제11조) 중 “제10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2조)제3항 중 “공수의(公獸醫)”를 “공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를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를 “제15조”로, “또는 관리자가”를 “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시행령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7조”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를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제18조”로,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를 “소유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로, “청구”를 “소유자 등에게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7조제4항”으로,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징수”를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8조”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6조의3)의 제목 “(맹견의 출입금지 등)”을 “(맹견의 출입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 등”

으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16조) 제1항 전단 중 “설치·관리할수”를 “설치·관리할 수”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를 “소유자 등”으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중전의 제21조)의 제목 “(반려동물의 지원)”을 “(반려동물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반려견 놀이터

제30조(종전의 제23조) 제2항제3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유자 또는”을 “소유자 등 또는”으로, “소유자가”를 “소유자 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유자 또는”을 “소유자 등 또는”으로, “소유자가”를 “소유자 등이”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4조)제1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1. (생 략)</p> <p>1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u>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중전 제8호에서 이동, 2024.7.4.></p> <p>13. “이용료”란 <u>마포구</u> 반려 동물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마포구</u> <u>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u>구민의 참여를</u>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2조(정의)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 ----- <u>소유자 등과</u> ----- ----- -----.</p> <p>13. ----- <u>서울특별시 마포구</u>(이하 “구”라 한다) ----- -----.</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 ----- -----.</p> <p>② ----- ----- <u>서울특별시 마포구민</u>(이하 “구민”이라 한다)-----</p>

③ (생 략)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

----- 서울특별시장-
----- 구 -----

-----.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동물복지위원회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 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
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
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
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
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
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
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
4. 삭제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팀장으로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⑪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질병·정신적 제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⑫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 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 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

6.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
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
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
서의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

4. 삭제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 (생 략)
제6조의2 (생 략)
제6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
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질병·정신적 제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우

제3장 동물의 관리 및 보호

제10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21조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
--- 소유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
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
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
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
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
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주

-----.

1. ~ 7.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0조-----

-----.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가 변경된 -----
----- 제
6호까지 변경된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제2호가 변경된

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9조·제10조 (생략)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

-----.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4조-----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구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제14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 제14조제1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제16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수의-----

-----.

④ -----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

-----.

제17조(동물의 반환 등) ① -----
--- 제14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5조-----

----- 등이 -----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법 제45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3. (생략)

제1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영 제6조-----

2. 3. (현행과 같음)

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 소유자
등-----
-----.

② -----

----- 영 제6조-----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5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 경비의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8조에 따른다.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
----- 제17조----- 소
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제18조
----- 소유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

----- 소유자 등에게 청구-----
-----.

② ----- 제17조제4항-----
----- 해당 -----

-----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

③ -----
----- 「서울특별시 동
물보호 조례」 제19조-----.

제2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 설치·관리할

치·관리할수 있다. .

② ~ ④ (생 략)

제17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 (생 략)

제19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0조 (생 략)

제21조(반려동물의 지원) ① ~

④ (생 략)

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출입·검사 등) ① -----

----- 소유자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6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8조(반려동물의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29조(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 (생략)

<신설>

제23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 ① (생략)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다른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
- ③ 반려견 놀이터에서 소유자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4장 반려견 놀이터

제30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1. 2. (현행과 같음)
- 3. -----
----- 소유자 등

- ③ ----- 소유자 등

또는 반려견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⑤ (생략)

제24조(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25조 ~ 제27조 (생략)

<신설>

제28조 (생략)

또는 -----

----- 소유자 등이 -----
-----.

④ -----
--- 소유자 등 또는 -----
----- 소유자 등이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 ① -----

--- 규칙-----.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 ~ 제34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5장 보칙

제35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동물보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 ⑦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9조(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26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총예산: 39,000천원
- 26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 총예산: 6,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홍경아
연 락 처	02-3153-8542